

의안번호	제 213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9월 30일 (제 303 회)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9일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
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

최병윤·김양희·박종성

정지숙·유완백·장병학의원

1. 개정이유

-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재산(기금)으로 전액 출연하는 등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 변화에 따라 기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,
-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명칭 변경

-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
→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

나.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 조항의 폐지

-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재산으로 전액 출연함에 따라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 조항을 폐지함

다.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기금의 설치·관리·경과조치 명시

- 부칙 제2조에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

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함을 명시함.

-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명시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관련부서 의견수렴 : 의견수렴 과정 거침
- 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- 라. 예산조치 : 예산조치사항 없음.
- 마.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- 바. 부패영향평가 : 이견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

제2조(설치)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문화여성환경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<개정 2006. 12. 22, 2010. 8. 11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

2.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
3.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,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9조(수당 및 여비)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·육성

제10조(지정 및 취소)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예술 법인·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·단체
2. 극단·뮤지컬단·관현악단·무용단·합창단·오페라단·실내악단·창극단·국악단·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·단체
3.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·단체

②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.

④ 전문예술법인·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원·육성) 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공공 공연·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·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적용례)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시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한다. 다만, 2011년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비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정산을 완료한 후 그 잔액을 출연한다.

제3조(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충북문화재단이 설립·운영될 때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(제-02719호)의 규정을 따른다.